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08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어기구 · 이개호 · 박희승

오세희 • 박지원 • 박균택

김종민 · 소병훈 · 임호선

송옥주·주철현·김재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 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 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152조의2제2항"을 "제15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52조의2를 제152조의3으로 하고, 제152조를 제152조의2로 하며, 제1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2조의2(종전의 제1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다)을 지급대상자 명의 지정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 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비용

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 ④ (생 략) 가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우 ⑤ 제152조의3제2항-----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 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2조(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①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과 재 해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 (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한 다)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 된 계좌(이하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 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구제비용 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 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유기구제비용등 을 지급할 수 있다.

<u>제152조</u>(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생 략)

<신 설>

<u>제152조의2</u>(임금채권 등의 우선 변제) (생 략)

- ②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유기구제비용등만이 유기구제 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기구제 비용등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52조의2(양도 또는 압류의 금 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52조의3(임금채권 등의 우선 변제) (현행 제152조의2와 같 음)